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9. 30 선고 2021가단262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9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‘부동산의 표시’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81. 1. 26. 접수 제7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상호

별지